

英祖 前半期(1724~1744)의 書籍政策

우 경 섭*

- 머리말
1. 王室系譜·儀軌類의 編纂
2. 政書類의 刊行과 進講

3. 制度改革과 法典의 整備
맺음말

머리말

18세기 조선 사회는 英祖와 正祖가 추진한 蕩平政治를 기반으로 17세기 후반 이래 朋黨政治가 노정해온 문제점들을 극복해가며 찬란한 문화적 업적을 성취한 시기였다. 특히 국가의 주도 아래 활발하게 전개된 각종 서적의 편찬과 간행사업은 이 시기 문화발전을 대표하는 가장 특징적인 면모 가운데 하나이다.

개국 이래 일관되게 文治主義를 표방해온 조선왕조에서 서적은 敎化의 근본이자 治亂의 원천으로 인식되어 왔다.¹⁾ 조선의 역대 국왕들은 통치이념의 정비와 백성들에 대한 敎化의 주요 수단으로 서적정책을 중시하였으며, 따라서 校書館 등 국가 기관의 주관 아래 편찬·간행된 서적들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뿐만 아니라 사상·문화의 변천과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 것이었다. 특히 兩亂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어느 정도 사회가 안정되어가던 18세기 英·正祖대에 들어와서는 국왕의 적극적인 주도 아래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서적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봉당정치에 비판에서 비롯된 갈등과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17세기 이후 이룩한 사상·문화의 발전 성과를 정리함으로써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본고는 이처럼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영·정조대의 서적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18세기 조선사회가 지향했던 새로운 국가건설의 정치적·사상적 趨向을 해명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그 첫번째 작업으로서 영조대 전반기(1724~1744) 20년간 영조가 추진하였던 각종 서적의 편찬과 간행사업을 검토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²⁾ 이 기간은 乙巳換

* 필자 : 서울대 강사

- 1) “敎化之本具於書, 治亂之原鑑於書.” (『奎章閣志』 권1 「書籍條」)
- 2) 그간 英祖代 역사상에 대한 주된 관심은 蕩平論의 전개와 관련하여 당시의 정국 동향 및 정치세력 간의 대립양상을 설명하는 데 집중된 듯하다. 이는 무엇보다 英祖代가 왕위 승계과정에서 비롯된 봉당간의 격심한 갈등에 휘말렸던 시기라는 점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러한 경향의 주요 저술로는 다음의 논저를 참조할 수 있다. 鄭萬祚, 「英祖代 初半의 政局과 蕩平策의 推進」, 『震檀學報』56, 1983; 朴光用, 「蕩平論의 展開와 政局의 變化」, 『韓國史論』10, 1984; 鄭萬祚, 「英祖代 中半의 政局과 蕩平策의 再定立」, 『歷史學報』111, 1986; 朴光用, 「朝鮮後期 蕩平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4. 그러나 최근에는 經筵에서 나타나는 영조의 性理學 이해를 중심으로 蕩平論의 의미를 해명하려

局·丁未換局·己酉處分·十九下教·混沌開闢·庚申處分·辛酉大訓 등 換局과 處分, 그리고 下教와 大訓으로 집철되었던 정치적 격변기였다. 영조는 이처럼 복잡한 정국 동향 속에서 봉당정치와는 다른 새로운 정치질서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서적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영조가 추진한 서적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정국 동향과 조응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영조대 전반기를 다시 ① 제1기: 영조가 왕위에 오른 1724년(영조 즉위년)부터 己酉處分이 있었던 1729년(영조 5)까지, ② 제2기: 蕩平論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던 1730년(영조 6)부터 庚申處分 직전인 1739년(영조 15)까지, ③ 제3기: 庚申處分이 있었던 1740년(영조 16)부터 『續五禮儀』와 『續大典』의 완성으로 제도개혁이 일단락된 1744년(영조 20)까지 등 세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 서적의 편찬·간행활동의推移를 검토하려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때의 서적정책이 단순하게 정치세력 간의 '調劑保畧'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 아니라, 봉당정치가 드러낸 문제점을 개혁하려는 노력 가운데 제기된 새로운 君主像의 확립이라는 사상적 측면과 상호 연관 아래 진행된 것임을 해명함으로써, 영조가 주도했던 이 시기 서적정책의 역사적 의미를 究明하고자 한다.

1. 王室系譜·儀軌類의 編纂

景宗代 辛丑·壬寅 두 차례의 獄事를 겪고 왕위에 오른 영조는 1725년(영조 1) 3월에 자신의 즉위를 도왔던 노론측 인물들을 대거 등용한 乙巳換局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노론은 소론에 대한 강경한 討逆을 주장함으로써 오히려 老·少 간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었고, 영조는 이러한 당파 간의 갈등이 왕위까지 위협하게 되는 상황이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1727년(영조 3) 7월 丁未換局을 통해 노론을 정계에서 축출하고 소론을 다시 등용하였다. 그러나 1728년(영조 4) 3월 급진적인 소론과 남인의 일부가 중심이 되어 戊申亂을 일으키자 영조는 蕩平論을 정국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표방하는 가운데, 1729년(영조 5) 8월의 己酉處分을 통해 숙종대 이후 노·소론이 내세운 각각의 義理를 절충하며 당파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환국이 거듭되는 혼란한 정치 동향과 戊申亂의 여파 속에서 영조는 무엇보다 자신

는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이 시기에 간행된 서적들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부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저를 참조할 수 있다. 權延雄, 『조선 영조대의 經筵』, 한일문화교류기금, 1988; 池斗煥, 「조선후기 영조대 경연 과목의 변천」, 『진단학보』81, 1996; 池斗煥, 「경연과목의 변천과 진경시대의 성리학」, 『진경시대(상)』, 1998; 鄭景姬, 「英祖 前半期(1724~1748) 중앙학계와 英祖의 性理學 이해」, 『韓國史研究』103, 1998; 鄭景姬, 「英祖 後半期(1749~1776) 經筵과 英祖의 義理論 강화」, 『歷史學報』162, 1999. 그밖에 영조대 서적정책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로는 姜順愛, 「朝鮮 英祖朝의 圖書編纂 및 刊行에 관한 書誌의 研究」,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82가 참고된다.

〈표 1〉 1724년(영조 즉위년)~1729년(영조 5) 서적 간행의 추이³⁾

번호	연도	서명	편저자/간행처	분류
1	1724(즉위년)	景宗殯殿都監儀軌	殯殿都監	전례
2	1724(즉위년)	景宗魂殿都監儀軌	魂殿都監	전례
3	1724(즉위년)	景宗國葬都監都廳儀軌	國葬都監	전례
4	1725(영조 1)	眞宗世子受冊時冊禮都監儀軌	冊禮都監	전례
5	1725(영조 1)	瑤源譜略	宗簿寺	왕실
6	1725(영조 1)	列聖御筆	宗親府	왕실
7	1725(영조 1)	列聖御筆刊進及景宗大王御筆屏風謄錄	宗親府	왕실
8	1726(영조 2)	肅宗尊崇都監都廳儀軌	尊崇都監	전례
9	1726(영조 2)	尊崇都監儀軌	尊崇都監	전례
10	1726(영조 2)	景宗端懿王后祔廟都監都廳儀軌	祔廟都監	전례
11	1726(영조 2)	英祖貞聖后復位時冊禮都監都廳儀軌	冊禮都監	전례
12	1726(영조 2)	列聖御製	宗簿寺	왕실
13	1726(영조 2)	當代瑤源錄	宗簿寺	왕실
14	1726(영조 2)	景宗大王御製添刊時謄錄	宗簿寺	왕실
15	1727(영조 3)	辟瘟新方	安景昌	민생
16	1727(영조 3)	二倫行實圖	箕營	교육
17	1727(영조 3)	眞宗孝純后嘉禮都監儀軌	嘉禮都監	전례
18	1727(영조 3)	南溪集	朴世采	교육
19	1727(영조 3)	瑤源譜略	宗簿寺	왕실
20	1728(영조 4)	祖鑑	趙顯命	왕실
21	1728(영조 4)	肅宗實錄	實錄廳	실록
22	1728(영조 4)	戊申逆獄推案	推鞠廳	변란
23	1728(영조 4)	肅宗大王實錄奉安形止案	春秋館	실록
24	1728(영조 4)	二十一功臣會盟錄	錄勳都監	변란
25	1728(영조 4)	奮武原從功臣錄券	錄勳都監	변란
26	1728(영조 4)	奮武錄勳都監儀軌	錄勳都監	변란
27	1728(영조 4)	揚武原從功臣錄券	錄勳都監	변란
28	1728(영조 4)	眞宗殯宮都監儀軌	殯殿都監	전례
29	1728(영조 4)	孝章世子墓所都監儀軌	墓所都監	전례
30	1728(영조 4)	乙巳聖上卽位增廣別試文武科榜目	禮曹	방목
31	1728(영조 4)	孝章世子年譜	英祖	왕실
32	1728(영조 4)	進上別單謄錄	禮曹	기타
33	1728(영조 4)	瑤源譜略修正時儀軌	宗簿寺	왕실
34	1728(영조 4)	英祖戊申別謄錄	備邊司	변란
35	1729(영조 5)	崇禎再丁未合五慶增廣別試司馬榜目	禮曹	방목
36	1729(영조 5)	癸卯肅宗大王祔太廟增廣司馬榜目	禮曹	방목
37	1729(영조 5)	瑤源錄移安形止案	宗簿寺	왕실
38	1729(영조 5)	肅宗大王實錄奉安時形止案	春秋館	실록
39	1729(영조 5)	仁元王后英祖大王加上尊號都監冊寶圖式	尊號都監	전례
40	1729(영조 5)	勘亂錄	宋寅明	변란
41	1729(영조 5)	當代瑤源錄	宗簿寺	왕실
42	1729(영조 5)	孝章世子喪變時謄錄	侍講院	전례
43	1729(영조 5)	孝章世子禮葬都監儀軌	禮葬都監	전례

3) 『英祖實錄』·『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 및 姜順愛, 앞의 논문 참조.

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임을 절감하였다. 자신의 왕위 승계에 대한 의혹과 논란의 여지를 불식시킴으로써 이를 둘러싼 노·소간의 다툼을 방지하는 것을 가장 급선무로 인식했던 영조의 의중은 이 시기 국가 주도의 서적 편찬·간행의 추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에 의하여 영조 즉위년~5년 사이에 편찬·간행된 43종의 서적을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표 2〉 1724년(영조 즉위년)~1729년(영조 5) 간행 서적의 내용과 비율

	①전례	②왕실	③정치	④교육	⑤법전	⑥관직	⑦변란	⑧실록	⑨민생	⑩방목	⑪기타	소계
종수	14	12	0	2	0	0	7	3	1	3	1	43
비율	32.6%	27.9%	0.0%	4.7%	0.0%	0.0%	16.3%	7.0%	2.3%	7.0%	2.3%	100%

위의 〈표 2〉에서 가장 먼저 주목되는 점은 바로 ① 國葬·祔廟·冊禮·嘉禮·尊號加上·遷陵 등 국가 전례와 관련된 儀軌·謄錄類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면모는 우선 경종의 國葬과 祔廟, 孝章世子の 冊封과 嘉禮, 肅宗에 대한 尊崇事業의 시행 등, 불가결한 각종 국가 전례가 빈번하게 거행될 수밖에 없었던 즉위 초반의 상황에서 기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②에 해당하는 『璿源譜略』·『當代璿源錄』 등 王室系譜類 및 역대 국왕의 御製·御筆類 등 왕실관련 서적 역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역시 新王의 즉위 초반 그간의 왕실계보를 정리해왔던 조선왕조의 常例에 비추어 그다지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은 아닌 듯하다. 게다가 孝章世子の 갑작스러운 薨逝 및 『숙종실록』을 미처 완성하지 못한 채 영조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된 경종대의 상황 등은 ① ②⑧에 해당하는 서적들이 전체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현상을 어느 정도 설명해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조대 초반의 가장 커다란 정치적 변란이었던 戊申亂의 처리와 관련된 서적 역시 이 시기 서적정책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면모라 할 수 있다. 戊申亂의 발생부터 종결에 이르는 전말을 기록하고 그 의미를 정리한 『勘亂錄』·『戊申別謄錄』 등의 서적들과, 戊申亂의 평정에 공을 세웠던 奮武功臣의 錄勳儀軌·錄券·會盟錄 등 7종의 서적은 이 시기 서적정책에 반영되었던 정치적 흐름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영조 4년~5년의 소론 집권기에 간행된 3종의 榜目類 역시 당시의 정국 동향과 직접 결부된 것이었다. 1728년(영조 4) 간행된 乙巳年(영조 1) 增廣試 榜目的 경우 乙巳換局 직후 設行된 文武科의 합격자 명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乙巳換局으로 축출된 소론으로서 그 명분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1729년(영조 5) 간행된 2종은 경종 연간 徽號 加上 및 肅宗祔廟를 경축한다는 명분 아래 설행된 增廣試의 榜目이지만 사실은 신임옥사와 관련된 것이었으므로

乙巳換局 이후 罷榜되었던 것이다. 즉 세 榜目 모두 乙巳換局과 관련된 것이었으므로, 이때 소론은 乙巳換局的 反案과 함께 새로운 榜目を 정리해내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즉위 초반 5년이라는 기간 동안 43종에 달하는 적지않은 서적들이 편찬·간행되었지만 그 중 39종이 국가전례와 관련된 儀軌·謄錄類 내지 王室系譜類, 御製·御筆類, 혹은 노·소 갈등과 결부된 戊申亂 관련 謄錄類·錄券類 및 榜目類라는 사실은 이 시기 영조에 의해 추진된 서적정책이 정국의 운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상의 39종을 제외한다면 ④ 교육과 관련된 서적으로, 숙종대 蕩平論을 제기했던 朴世采의 문집인 『南溪集』,⁴⁾ 長幼·朋友의 도리를 설명한 『二倫行實圖』, ⑨ 민생과 관련된 『辟瘴新方』, ⑩ 기타에 속하는 『進上別單謄錄』 등 4종에 불과하다. 이러한 양상은 제1기가 즉위 초반의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정국 안정이라는 현실적 과제 이외의 다양한 사상적 모색을 하기에는 여유가 부족했던 시기였음을 말해준다. 즉위 직후 영조는 왕실 재정의 긴축을 이유로 經筵에서 사용하는 책자를 새로 인출하지 말고 內藏되어 있는 것을 쓰도록 하거나 內藏된 것이 없으면 寫字官으로 하여금 베껴서 올리도록 할 정도로 서적의 편찬·간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데,⁵⁾ 이는 己酉處分 이후 정국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던 시기와 비교해 보면 서적정책의 내용이 그만큼 빈약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이 시기의 특징적인 면모라 할 수 있는 전례·왕실 관련 서적의 빈번한 편찬과 간행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즉위 초반이라는 정치적 배경을 그 주요 원인으로 거론할 수 있겠지만, 신임옥사 및 戊申亂의 처리와 관련하여 ‘孝’와 ‘忠’의 개념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던 당시의 시대 분위기와도 깊이 관련된 것이었다. 孝와 忠에 대한 고민은 儒學을 국가이념으로 삼은 조선에서 통시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영조대 초반과 같이 한 시대를 규정하는 이념으로서 孝와 忠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던 시기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우며, 또한 향후 전개될 새로운 君主像의 확립에 대한 논쟁과도 밀접하게 결부되고 있음을 볼 때, 孝·忠에 대한 논란은 영조 전반기 서적정책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영조는 즉위 초반 자신의 왕위 승계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영조는 ‘繼志述事’의 이념을 내세움으로써 자신의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노·소 간의 대립을 불식시키고자 하였다. 繼志述事란 孔子가 周나라 武王과 周公이 先王들의 사업을 계승하여 훌륭한 업적을 남긴 것에 대하여 칭송한 말로,⁶⁾ 先代의 治績과 遺志를 이어받아 완성시키는 것이 後王이 추구해야 할 孝의 요체임을 설명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역대 임금들이 즉위 초 가장 먼저 표방하는 바가 바로 繼志述事의 이

4) 『南溪集』의 실제 간행은 1731년(영조 7년) 1월 慶尙道觀察使 趙顯命에 의해 이루어졌다.

5) 『英祖實錄』 권1, 즉위년 10월 20일(경인).

6) “子曰, 武王周公, 其達孝矣乎. 夫孝者, 善繼人之志, 善述人之事者也.”(『中庸章句』 제19장)

넘어있는데, 영조 역시 ‘繼志述事’로 요약되는 孝의 관념으로써 先王(숙종)의 정치를 계승하려는 의지를 드러내었고, 경종에 대해서는 ‘悌’의 명분을 내세움으로써 자신이 숙종과 경종의 정당한 계승자임을 과시하였다. 그리고 孝-繼志述事の 논리를 앞세워 숙종·경종대 내려진 기존의 정치적 처분들을 재검토해 갔다. 즉위 원년 소론을 정계에서 축출한 乙巳換局의 명분으로 소론이 국왕의 孝悌와 繼志述事の 의리를 거스르도록 만든 무리라는 논리를 내세운 것은 영조의 孝悌에 대한 강조가 정치적으로 깊은 含意를 지니고 있던 것을 잘 보여준다.⁷⁾ 즉 신축옥사를 주도한 金一鏡은 경종의 총명함을 가리워 숙종대 처분을 變改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숙종에 대한 경종의 효성을 어그러지게 하였으며, 임인옥사를 고변한 睦虎龍은 자신에게 三手의 혐의를 덮어씌움으로써 경종을 해치려한 不孝·不悌한 인물로 의심받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柳鳳輝·李光佐·趙泰億 등 소론 대신들에 대한 처벌 역시 ‘聖祖(숙종)의 뜻을 體得한 것이자, 大行王(경종)의 뜻을 준수하는 것’임을 내세운 것이다.⁸⁾ 그런데 노론은 영조가 내세운 孝悌의 이념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였지만, 그 의미는 영조가 말하는 孝悌와는 다른 것이었다. 노론이 주장한 孝悌란 바로 ‘繼志述事’의 이념 자체, 즉 先王 숙종이 노론의 정당성을 확인해 준 辛巳年(숙종 27), 丙申年(숙종 42), 丁酉年(숙종 43)의 처분을 固守하는 것을 의미하였다.⁹⁾ 따라서 ‘孝悌’를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명분으로 내세운 영조와, 소론에 대한 討逆의 근거로 삼으려 했던 노론 사이에서는 孝悌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영조는 孝의 이념이 오히려 노론의 義理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면서 갈등을 악화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되자, 繼志述事로 요약되는 노론의 孝 관념과는 다른, 보다 넓은 의미의 孝 이념을 내세웠다. 즉 父子 사이의 義理를 규정한 孝의 관념을 君臣 관계로까지 확대 적용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를 원용하여 왕실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갔다. “천하의 것을 다해서라도 어버이에게는 검소하게 하지 않는다”¹⁰⁾는 말에서 보이듯이, 영조는 신하들에게 자신의 어버이 즉 왕실의 권위를 강조하며 대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생모 淑嬪 崔氏의 祠宇를 새로 짓고 宗廟의 展謁禮를 강행하는 등,¹¹⁾ 왕실에 대한 尊崇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항상 孝의 논리를 앞세웠다. 이는 단지 先王들에 대한 영조 자신만의 孝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신하들에게도 孝의 관념에 입각하여 왕실에 대한 尊崇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그런데 君臣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은 ‘三諫’이라는 말로 상징되는 바와 같이 세 번 諫言을 올려도 임금이 듣지 않으면 떠나는 것을 의리라 여겼던 반면,¹²⁾ 자식은 부모의 잘못

7) 『英祖實錄』 권2, 즉위년 11월 11일(신해).

8) 『英祖實錄』 권7, 원년 7월 4일(기해).

9) 『英祖實錄』 권3, 원년 1월 2일(신축).

10) 『英祖實錄』 권10, 2년 10월 22일(경진).

11) 『英祖實錄』 권7, 원년 8월 4일(기사); 권8, 원년 12월 1일(갑자).

에 대하여 諫言할 수는 있어도 떠날 수는 없다는 것이 儒學의 전통적인 父子 관계였다.¹³⁾ 그리고 그 상징적 인물로 부모의 그릇된 명을 거역하지 못하고 다만 '號泣于旻天' 하는 舜의 효성이 칭송되었던 것이다. 노론은 이러한 君臣·父子 관계의 차별성에 근거하여 영조의孝 이념을 부정하였고 여전히 繼志述事に 입각한 討逆論을 주장하였던 반면, 영조는孝의 이념을 君臣 관계에까지 확대시키며 자식이 부모의 명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듯이 신하 역시 국왕의 명에 따라야 함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노론이 繼志述事로 대변되는 自黨의 의리를 앞세워 붕당 간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자, 영조는 1727년(영조 3) 7월 丁未換局을 단행하여 宋寅明·趙文命·趙顯命 등 소론 蕩平派를 재상에 임명하여 정국을 이끌어갔다. 그리고 자신의 왕위 승계와 정치적 처분의 정당성을 숙종에 대한孝-繼志述事の 의미로 해석하던 영조는 丁未換局 직후 내린 敎書를 통해 신임 연간 노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어온 숙종대 처분의 절대성을 부정하였다. 즉 丙申處分으로 대표되는 숙종의 처분은 노·소간의 대립 속에서 노론의 의리를 인정한 조처가 아니라 黨習을 진정시키려는 방편에 불과하였음을 강조하였던 것이다.¹⁴⁾ 노론은 이같은 정국 반전을孝-繼志述事の 의리에 어긋난 것으로 비판하였지만, 영조는 '先王에 대하여 충성하지 않으면서 後王에게 어찌 충성할 수 있겠는가?' 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破朋黨의 이념 아래 君臣간의 分義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¹⁵⁾ 따라서 丁未換局 이후 당분간孝의 개념을 둘러싼 논쟁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그간 父子 간의 관계를 규정한孝의 이념(繼志述事가 아닌 號泣于旻天)을 국가적인 범위까지 확대시킴으로써 君臣紀綱의 확립을 독려하는 가운데,¹⁶⁾孝의 관념이 점차 국가와 왕실에 대한 忠의 논리로 전환되어 갔던 것이다.

換局 직후 영조는 신임연간 노론의 建儲·代理 요구를 경종에 대한 신하의 직분을 다하지 못한 행위로 규정하고, 丁未換局의 의의를 '임금이 임금 구실을 하고 신하가 신하 구실을 하는 分義를 정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乙巳處分에 대한 反案으로 노론 4대신에 대한 官爵 추탈 및 贈諡 환수 등의 처분을 내리며,¹⁷⁾ 그 근거로 忠의 이념을 내세웠다. 이때 忠이란 純然하여 잡된 것이 없다는 의미(盡己)로 해석되는데, 영조는 忠逆의 구분이 자신의 建儲·代理에 대한 찬반 여부에 따라 '노론=찬성=忠', '소론=반대=逆'의 구도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建儲·代理에 대한 의견에 자신의 이익을 돌아보려는 사사로운 마음이 개입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忠逆이 결정된다는 논리였다. 즉 壬寅年 노론 4대신의 행위에는 自黨의 이

12) 『論語集註』「里仁」 제26장; 「季氏」 제1장.

13) 『論語集註』「里仁」 제18장; 『孟子集註』「萬章上」 제1장.

14) 宋寅明 역시 숙종의 처분은 春夏秋冬이 각기 질서를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이 黜陟과 進退가 모두 事宜에 맞게 되어 있는 것이라 말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英祖實錄』 권13, 3년 9월 18일(신미).

15) 『英祖實錄』 권12, 3년 7월 4일(무오), 8일(임술), 10일(갑자), 11일(을축).

16) 『英祖實錄』 권19, 4년 9월 19일(병인).

17) 『英祖實錄』 권13, 3년 10월 6일(무자).

익을 돌보려는 私意가 개재되어 純一하지 못하였으므로 不忠이라 규정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영조는 君臣義理의 확립으로 요약되는 忠의 이념을 정국 운영의 기본 원리로 표방하였다.¹⁸⁾ 이처럼 영조가 忠의 이념을 강조했던 이유는 각 봉당이 내세우는 의리를 조정할 초월적 존재로서 왕실과 국가의 독자적 위상을 확립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논리는 결국 “國家가 있고서야 朋黨이 있는 것이다. 나라가 없으면 卿들이 어느 곳에서 黨論을 펴겠는가?”라는 말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¹⁹⁾ 국가와 왕실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이 서적정책에도 반영되어, 위의 <표 1>·<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王室系譜類·儀軌類의 집중적인 편찬과 간행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1728년 편찬된 『孝章世子年譜』는 영조가 서적정책을 왕실과 국가의 권위를 강화하는 데 주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영조는 古수를 막론하고 왕실 인물의 행적을 기록한 年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孝章世子の 年譜를 손수 편찬하게 된 의도가 ‘朝廷과 백성의 安危가 모두 달려있는 존재’인 왕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²⁰⁾ 영조의 이같은 말은 이 시기 서적 편찬이 국가와 왕실의 독자성과 권위를 提高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향후 영조의 정국 운영이 국가의 근간으로서 강력한 왕권의 건설에 집중될 것임을 예고하는 언설이기도 하였다.

戊申亂 이후 忠에 대한 영조의 관심은 더욱 구체화되어 갔다. 戊申亂 발생 직후 영조는 난의 근본 원인으로 朋黨을 지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첫째는 조정에서 朋比만을 일삼아 재능있는 자의 등용을 생각하지 않고 色目만을 추중·권장하여 사대부들이 관직에 불만을 갖도록 만든 것, 둘째는 백성들은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데 오직 同黨伐異만을 일삼아 백성들까지 난에 참여하도록 만든 것 등은 하나도 朋黨이요, 둘도 朋黨이다.²¹⁾

위의 말은 戊申亂의 근본 원인이 당파 간의 갈등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일 뿐 아니라, 반란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黨色에서 벗어나 공정한 인재 등용의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생의 안정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즉 이후 추진될 ‘공정한 인사정책’과 ‘민생의 안정’이라는 蕩平의 두 가지 기본 원칙을 천명하

18) 이는 丁未換局 직후 孝章世子の 冠禮를 거행할 때 孝悌와 忠順의 도리를 강조한 敎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孝悌와 繼志述事만을 강조한 卽位敎書와 비교해 볼 때 忠順의 도리가 더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英祖實錄』 권13, 3년 9월 9일(임술).

19) 『英祖實錄』 권8, 4년 5월 7일(정사).

20) “王公家, 古無年譜, 而元良自私邸入闕, 焉豈特予之倚重, 定儲之後, 宗社之重, 臣民之安, 係乎一人, 而今已遽逝, 予之哀痛者, 非乎私也, 乃爲國也.”(『孝章世子年譜』「年譜後叙」)

21) 『英祖實錄』 권16, 4년 3월 25일(을해).

는 말이었다. 그리고 영조는 그같은 목적을 달성할 구체적 방안으로서 君臣紀綱의 확립, 즉 忠의 이념을 제시하였다. 영조는 戊申亂의 전모를 서술한 『勘亂錄』에서, 우리나라는 본래 禮義之邦이었지만 근래 봉당의 폐해가 생겨난 뒤부터 君父를 誣陷하고 惡逆을 저지르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음을 통박하고, 무엇보다 君君臣臣의 의리를 시급히 정립할 것을 신하들에게 요구하였다.²²⁾ 이는 君臣紀綱 내지 君君臣臣의 의리로 구체화된 忠 이념이 丁未換局과 戊申亂을 거치면서 蕩平論과 결부되어감을 보여주는 말이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己酉處分 이후 더욱 정교한 이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영조의 왕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뒷받침하는 이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2. 政書類의 刊行과 進講

1729년(영조 5) 8월 영조는 趙泰采·李健命을 신원시킨 己酉處分을 통해 노론이 出仕할 수 있는 명분을 열어주었다. 그런데 己酉處分은 단순히 노론이 주장해온 신임의리를 일부나마 인정하였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간 소론 蕩平派 위주의 정국 운영에서 벗어나 노·소간의 세력 균형을 꺾으며 당파 간의 갈등을 주재하는 조정자로서 국왕의 강력한 권위를 점진적으로 마련해 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己酉處分 이후로 정치적 갈등이 점차 진정되어 가는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1730년부터 1740년 1월 庚申處分에 이르는 약 10년 동안은 앞 시기에 제기되었던 忠의 이념을 토대로 삼아 강력한 왕권을 정점으로 하는 다양한 국가이념을 모색하며, 인사의 공정성 확보와 민생의 안정이라는 蕩平의 기본 목표를 구체화하던 시기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편찬·간행된 서적들의 면모를 己酉處分 이전과 비교해 보면, 내용적으로 훨씬 다채로워진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시기에 간행된 서적들의 면모와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3>·<표 4>와 같다.

己酉處分으로부터 庚申處分에 이르는 약 10년간의 기간 동안 간행된 서적들을 일람하면, 우선 총 64종의 서적 가운데 儀軌類·王室系譜類 등 국가와 왕실의 전례 및 계보 등을 정리한 서적이 30종으로 여전히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①②에 해당하는 서적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던 제1기와 비교해 보면, 제2기에 들어와서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1735년(영조11)에 즉위 직후부터 간행이 준비되어 온 『璿源譜略』·『國朝御牒』·『列聖八高祖圖』가 완성된 뒤로는, 의례적인 『璿源譜略』·『當代

22) “夫子曰, 君子周而不比, 小人比而不周, 聖人之言, 垂戒千載矣, 且曰, 苟患失之, 無所不至, 今茲撰勘亂錄之意, 曉義理於今世, 明君臣於百代矣. (….) 我國以三百年禮義之邦, 君君臣臣之義, 明於青丘, 而不幸以黨牘之害, 初則不過因好勝之心, 一轉而遽生疑阻, 再轉而竄黷聯翩, 三轉而殺戮相加, 以至於誣君父犯惡逆之境, 此正夫子所謂無所不至者也.” (『勘亂錄』「御製序勘亂錄仍戒大小臣僚」)

〈표 3〉 1730년(영조 6)~1639년(영조 15) 서적 간행의 추이

번호	연도	서명	편저자/간행처	분류
1	1730(영조 6)	肅廟寶鑑	李德壽	왕실
2	1730(영조 6)	三綱行實圖	李衡佐	교육
3	1730(영조 6)	宣懿王后殯殿都監儀軌	殯殿都監	전례
4	1730(영조 6)	宣懿王后魂殿都監儀軌	魂殿都監	전례
5	1730(영조 6)	宣懿王后山陵都監儀軌	山陵都監	전례
6	1730(영조 6)	宣懿王后國葬都監儀軌	國葬都監	전례
7	1731(영조 7)	眞宗東宮日記	侍講院	왕실
8	1731(영조 7)	宣廟寶鑑	校書館	왕실
9	1731(영조 7)	仁祖長陵遷陵都監都廳儀軌	遷陵都監	전례
10	1731(영조 7)	觀象玩占	觀象監	기타
11	1731(영조 7)	長陵奉遷時分院日記	承政院	전례
12	1731(영조 7)	仁祖大王遷陵謄錄	遷陵都監	전례
13	1731(영조 7)	睿源譜略	宗簿寺	왕실
14	1732(영조 8)	景宗實錄	實錄廳	실록
15	1732(영조 8)	景宗大王實錄奉安列聖實錄曝曬時形止案	春秋館	실록
16	1732(영조 8)	宣懿王后 祔廟都監都廳儀軌	祔廟都監	전례
17	1732(영조 8)	當代睿源錄	宗簿寺	왕실
18	1732(영조 8)	景宗大王實錄謄錄	實錄廳	실록
19	1732(영조 8)	聖學輯要	李珥	교육
20	1732(영조 8)	尤菴宋先生年譜	宋務源	교육
21	1733(영조 9)	退溪先生言行錄	權斗卿	교육
22	1734(영조 10)	農家集成	申沅	민생
23	1734(영조 10)	東賢奏議	李喜朝	정치
24	1734(영조 10)	續經筵故事	李喜朝	정치
25	1734(영조 10)	貞觀政要	校書館	정치
26	1734(영조 10)	宋李忠定公奏議	李綱/校書館	정치
27	1734(영조 10)	唐陸宣公奏議	陸贄/校書館	정치
28	1734(영조 10)	歷代名臣奏議	楊淮/校書館	정치
29	1734(영조 10)	朝天錄	趙憲	기타
30	1735(영조 11)	續三綱行實錄	校書館	교육
31	1735(영조 11)	睿源譜略	宗簿寺	왕실
32	1735(영조 11)	玉印造成都監都廳追補儀軌	造成都監	왕실
33	1735(영조 11)	國朝御牒	宗簿寺	왕실
34	1735(영조 11)	列聖八高祖圖	校正廳	왕실
35	1735(영조 11)	影幀摸寫都監儀軌	宗親府	왕실
36	1735(영조 11)	書傳正音	司譯院	교육
37	1735(영조 11)	春秋正音	司譯院	교육
38	1735(영조 11)	大學正音	司譯院	교육
39	1735(영조 11)	中庸正音	司譯院	교육
40	1735(영조 11)	論語正音	司譯院	교육
41	1735(영조 11)	孟子正音	司譯院	교육

〈표 3〉 계속

번호	연도	서명	편저자/간행처	분류
42	1735(영조 11)	景慕宮輔養廳日記	侍講院	왕실
43	1735(영조 11)	當代瑤源錄	宗簿寺	왕실
44	1735(영조 11)	宗簿寺謄錄	宗簿寺	관직
45	1736(영조 12)	莊祖世子受冊時冊禮都監儀軌	冊禮都監	전례
46	1736(영조 12)	東儒師友錄	朴世采	교육
47	1736(영조 12)	小學	校書館	교육
48	1736(영조 12)	女四書	李德壽	교육
49	1736(영조 12)	女四書諺解	李德壽	교육
50	1736(영조 12)	瑤源譜略	宗簿寺	왕실
51	1736(영조 12)	瑤源譜略改張儀軌	宗簿寺	왕실
52	1737(영조 13)	御製內訓	昭惠王后	정치
53	1737(영조 13)	忠經	馬融	교육
54	1737(영조 13)	孝經大義	董鼎/朱熹	교육
55	1738(영조 14)	耆老所題名錄	耆老所	관직
56	1738(영조 14)	武備志	箕營	기타
57	1738(영조 14)	當代瑤源錄	宗簿寺	왕실
58	1739(영조 15)	親耕儀軌	禮曹	전례
59	1739(영조 15)	惠順慈敬獻烈大王大妃殿尊崇都監都廳儀軌	尊號都監	전례
60	1739(영조 15)	溫陵封陵都監儀軌	封陵都監	왕실
61	1739(영조 15)	端敬王后復位祔廟都監儀軌	祔廟都監	전례
62	1739(영조 15)	瑤源譜略改修正時校正廳儀軌	宗簿寺	왕실
63	1739(영조 15)	瑤源譜略	宗簿寺	왕실
64	1739(영조 15)	近思錄	校書館	교육

〈표 4〉 1730년(영조 6)~1739년(영조 15) 간행된 서적의 내용과 비율

	①전례	②왕실	③정치	④교육	⑤법전	⑥관직	⑦변란	⑧실록	⑨민생	⑩방목	⑪기타	소계
종수	12	18	7	18	0	2	0	3	1	0	3	64
비율	18.8%	28.1%	10.9%	28.1%	0.0%	3.1%	0.0%	4.7%	1.6%	0.0%	4.7%	100%

瑤源錄의 改修 이외의 王室系譜類 및 국가 전례에 대한 적극적 관심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또한 이 시기에는 戊申亂에 대한 정치적 처리가 일단락됨으로써 변란의 처리와 관련된 서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숙종·경종대 정치적 처분과 관련된 榜目類 역시 보이지 않는다. 반면 정치운영과 관련된 政書類의 간행과 보급이 활기를 띄고, 이를 뒷받침할 학문적 배경으로서 교육관련 서적의 간행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는 점이 바로 제2기 서적정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己酉處分 이후 왕위 승계에 대한 논란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당파 간의 갈등이 점차 진정되어가면서, 안정된 정치적 환경 속에서

蕩平論에 대한 이론적 모색을 통해 새로운 통치이념의 확립에 힘을 기울이던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었다.

우선 己酉處分 이후 9년 1월의 十九下教 직후인 1730년~1733년 사이 4년간의 서적들 중에서는 宣祖·仁祖·肅宗·景宗에 대한 追崇 사업 및 景宗妃 宣懿王后의 國葬, 그리고 『景宗實錄』의 간행과 관련된 서적들이 다수를 차지하여, 총 21종 가운데 16종이 ①전례, ②왕실, ⑧실록의 분류에 속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5종으로는 『三綱行實圖』·『觀象玩占』·『聖學輯要』·『尤菴先生年譜』·『退溪先生言行錄』 등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시기의 사상적 경향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책으로는 1730년 8월 영조가 직접 서문을 쓰고 신하들에게 배포할 것을 명한 『三綱行實圖』를 들 수 있다.²³⁾

세종대에 편찬된 『三綱行實圖』의 간행과 보급은 조선전기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간 이루어진 『三綱行實圖』의 보급은 일반 백성들에 대한 교화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었던 반면, 이 시기 『三綱行實圖』의 간행과 보급은 일반 백성보다는 지배층 내부에 忠의 의리를 확립함으로써 군신간의 기강을 확립하는 데 직접적인 목적이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6년 3월 영조가 各道の 觀察使에게 내린 別諭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영조는 이 글을 통해 黨論의 폐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三綱으로 대표되는 教化 이념의 보급이라는 방안을 제시하고, 『三綱行實圖』 간행의 근본적인 의도가 ‘在上者를 忠義의 도리로 이끄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²⁴⁾ 이러한 영조의 언설은 이 시기 정국 운영이 ‘忠’을 기본 이념으로 삼아 黨弊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영조는 經筵에서 先儒들의 저작을 학습하면서도 君臣紀綱의 확립 즉 忠의 이념을 신하들에게 각인시키고자 노력하였는데, 『聖學輯要』의 진강 후 序文을 짓고 간행을 명한 것도 그러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는 安民과 紀綱을 언급한 영조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일찍이 조정이 화합한 뒤에야 백성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聖學輯要』에 安民章이 紀綱章 다음에 있는 것을 보고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척연히 스스로 반성하였다.²⁵⁾

영조는 1733년(영조 9) 1월에, 노론·소론을 막론하고 모두 왕실을 위한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스스로의 黨論을 앞세워 임금을 무함하고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요

23) 『英祖實錄』 권27, 6년 8월 6일(임인).

24) “上之六年春三月，降別諭于諸道觀察使，若曰，凡事有本，我朝禮樂文物，有勝於麗朝，而黨論之弊，患得患失，其禍至於去年逆變極矣。大詰雖已頒布，此亦末也，三綱行實所載，實為百行之本。(…)今人不知親上死長之義，惟梓行不緊文集，而此書印本絕少，人罕見之，必須多印廣布，使鄉曲人曉然皆知，在上者善以忠義之意，然後可以知所本矣。(…)此編之廣布，豈止為村閭夫婦感發興起之資已也。”(『三綱行實圖』「三綱行實圖序」)

25) 『英祖實錄』 권30, 7년 12월 2일(신묘).

지의 十九下教를 신하들에게 내렸다. 이를 통해 영조는 노·소론 모두에서 역적이 나온 만큼, 각 당과의 義理는 잊어버리고 蕩平에 동참할 것을 신하들에게 촉구한 것이다. 이처럼 忠의 이념을 근간으로 삼아 각 당의 의리가 아닌 국왕의 명령을 중시할 것을 신하들에게 요구하며 노·소 간의 갈등을 진정시킨 十九下教 이후 정국은 차츰 안정되어갔다. 영조는 이러한 성과에 고무되어 스스로를 舜에 비유할 정도로 蕩平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게 되었고,²⁶⁾ ‘붕당을 제거하고 백성을 보호하는 것’, 즉 민생의 안정이라는 蕩平의 근본 목표의 해결을 당면 과제로 제시하였다.²⁷⁾ 영조는 1734년(영조 10) 연두에 내린 備忘記에서 민생의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백성들의 恒産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을 신하들에게 역설하며 『農家集成』의 간행을 명함과 동시에,²⁸⁾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는데 진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²⁹⁾ 이같은 영조의 면모는 민생에 힘쓰는 임금다운(君君) 모습을 보임으로써 붕당 간의 다툼 속에 위축되어 갔던 국왕의 권위를 재확립하고, 신하들에게는 신하의 본분을 다할 것(臣臣)을 요구할 명분을 쌓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영조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노론을 중심으로 한 일부 신하들은 是非의 분별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君臣分義를 강조하여 言路를 차단하고 민생 안정을 내세워 실질적인 功效만 추구하는 것은 權謀術數이자 霸道라고 비판하며 반발하였다.³⁰⁾ 이같은 비판은 제1기에 孝와 忠이라는 義理를 둘러싼 논쟁이 전개되었던 상황과 비교해 보면, 王道와 霸道라는 구체적인 정치 행태에 대한 논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신하들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영조는 奏議類를 비롯한 政書類 서적들의 보급과 진강을 통해 王·霸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며 君師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영조는 1734년(영조 10) 무렵 經筵에서 『陸宣公奏議』·『李忠定公奏議(李綱奏議)』·『東賢奏議』·『歷代名臣奏議』 등 奏議類 서적들을 집중적으로 진강하며 古今의 治道에 대하여 신하들과 논의하는 가운데,³¹⁾ 그간 자주 제기되었던 言路 閉塞에 대한 신하들의 비판을 상쇄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지난 겨울 陸贄의 奏議에 興感하여 大詔를 반포하고 言路를 널리 열었다.”는 言官의 지적에서도 나타나듯이, 신하들 역시 그 의미를 인정하는 것이었다.³²⁾ 그리고 『李綱奏議』를 진강하며 常平法에 대하여 상세하게 논하는 모습에서 보이듯이, 奏議類의 진강과 간행은 君臣義理의 정립과 결부된 것일 뿐 아니라³³⁾ 十九下教 이후 강조되어

26) 『英祖實錄』 권35, 9년 8월 2일(경술).

27) 『英祖實錄』 권38, 10년 4월 10일(을묘).

28) 『英祖實錄』 권37, 10년 1월 1일(무인).

29) 備邊司 堂上官들로 하여금 各道를 나누어 旬管하여 良役·水災·旱災·備禦와 흉년의 賑恤 등 민생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구된 八道旬管堂上制의 시행을 명한 것이 바로 이때였다. 『英祖實錄』 권37, 10년 1월 14일(신묘), 22일(기해).

30) 『英祖實錄』 권33, 9년 3월 1일(임오), 권36, 9년 12월 19일(병인), 26일(계유).

31) 『列聖朝繼講冊子次第』 「召對進講冊子」.

32) 『英祖實錄』 권38, 10년 4월 12일(정사).

33) 池斗煥, 앞의 논문, 1998, 제4장 참조.

은 민생안정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³⁴⁾ 또한 영조는 奏議類와 함께 『貞觀政要』를 권장하면서 그 後序를 친히 짓고 校書館으로 하여금 간행하도록 명하였는데,³⁵⁾ 영조는 『貞觀政要』의 간행이 당시 신하들이 제기하였던 王霸論에 대한 논란과 결부된 것이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³⁶⁾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영조는 10년 11월 무렵에는 蕩平의 功效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여기고,³⁷⁾ 治道の 근본과 백성에 대한 教化를 중시하는 면모를 보이며 教化의 기본이 되는 서적을 재간행하는 방향으로 서적정책을 추진해갔다. 『心經』·『近思錄』을 關西에 반포하여 유교를 권장하도록 하고,³⁸⁾ 校書館으로 하여금 『內訓』과 『女四書』 및 『三綱行實續錄』 등을 간행하도록 명하기도 하였다.

영조는 13년 8월의 混沌開闢을 통해 노·소의 대립을 완전히 종식시키고자 하였다. 混沌開闢은 그간 있었던 모든 일의 是非 논쟁을 先天(混沌)으로 돌리고, 앞으로는 새로운 세상(開闢)임을 천명하여 과거의 是非와 관계없이 오직 능력있는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한 사건이었다.³⁹⁾ 여기에 근거하여 老·少 뿐만이 아닌 小北과 南人까지 포용하는 ‘大蕩平’의 이념이 제기되었는데, 이처럼 사상적 성향을 달리하는 여러 정파를 포용하기 위해서는 구심점으로서 왕권의 확립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영조는 그간 왕권의 확립을 뒷받침하는 이념으로서 제기되어온 ‘忠’의 이념을 이론적으로 확고하게 정립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는데, 1737년(영조 13) 간행된 『忠經』이 바로 이러한 영조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었다.

『忠經』은 일반적으로 東漢의 古文經學家 馬融(79~166)이 저술하고 그의 제자 鄭玄이 주해를 달았다고 여겨져온 책이다.⁴⁰⁾ 목차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⁴¹⁾ 전체적인 체제는 『孝經』

34) 『英祖實錄』 권38, 10년 6월 2일(병오).

35) 『英祖實錄』 권39, 10년 12월 25일(병인).

36) 『貞觀政要』 「御製貞觀政要後序」.

37) 『英祖實錄』 권39, 10년 11월 4일(을해).

38) 『英祖實錄』 권37, 10년 3월 25일(신축).

39) 『英祖實錄』 권45, 13년 8월 28일(갑신).

40) 『忠經』의 眞僞 여부에 대한 논란은 唐代부터 시작되었다. 그 쟁점은 ① 본문 가운데 晉 梅賾의 『古文尙書』를 인용하였는데, 東漢人인 馬融이 晉 이후의 책을 언급한 것에 대한 의문, ② 馬融의 저술은 모두 『後漢書』에 실려있으며 鄭玄의 註釋은 모두 『鄭志』에 수록되어 있지만, 여기에 『忠經』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 ③ 隋·唐의 「經籍志」·「藝文志」에는 著錄되지 않았으며 宋代 『崇文總目』에서야 그 이름이 나타난다는 점 등이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忠經』의 본문과 주석은 모두 宋代 어떤 한 사람의 손에 의해 쓰여진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더욱이 그 체제가 『孝經』과 같이 18장의 체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忠經』이 『孝經』과 짝을 이루기 위해 후에 위조한 책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四庫全書總目提要』·『經義考』 및 鄧瑞全·王冠英 主編, 『中國偽書綜考』, 1998 등을 참조. 한편 『忠經』은 조선에서 널리 읽힌 책은 아니었던 듯하다. 實錄을 비롯하여 개인 문집과 각종 書目에 이르기까지 『忠經』과 관련된 기록을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19세기에 들어와서야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 등에 散見될 뿐이다. 현재 奎章閣에는 5종의 『忠經』이 소장되어 있으며, 간행 연도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奎中 1569> 등의 內賜記를 볼 때, 대략 1737년(영조 13) 전반기에 간행하여 弘文館·侍講院 등에 배포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41) 제1장 「天地神明」, 제2장 「聖君」, 제3장 「冢臣」, 제4장 「百工」, 제5장 「守宰」, 제6장 「兆人」, 제7장 「政理」, 제8장 「武備」, 제9장 「觀風」, 제10장 「保孝行」, 제11장 「廣爲國」, 제12장 「廣至理」, 제13장

을 모방하여 총 18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은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핵심적인 도리(事君要道)에 대하여 서술한 것이다. 그런데 『忠經』의 저술 목적은 ‘忠’ 자체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忠’과 ‘孝’의 관계를 해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⁴²⁾ 특히 본문 제10장 「保孝行」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孝의 궁극적인 완성은 忠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데,⁴³⁾ 이처럼 ‘忠’의 전제로서 ‘孝’의 의미를 찾아보려는 노력은 제1기 이래 영조가 黨派의 義理를 부정하고 蕩平을 주창할 때 사용되던 논리 그대로이다. 다시 말해서 『忠經』의 간행은 그간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孝와 忠에 대한 논리를 先儒의 언설을 통해 다시 한 번 정리함으로써, 忠이라는 이념으로 상징되는 국왕 중심의 정치체제를 뒷받침하려는 노력의 결산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목할 만한 사실은 『忠經』의 저자 馬融이 先王 숙종에 의해 文廟에서 黜享되었던 인물이라는 점이다.⁴⁴⁾ 馬融은 비록 經籍에 박통한 大儒로 평가받았지만, 東漢의 대표적인 權奸 梁冀에게 아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격이 방종하고 사치방탕하였다는 사실이 16세기 후반 이래 누차 지적된 바 있었는데, 결국 1682년(숙종 8) 성리학적 기준에 어긋나는 패륜행위가 문제가 되어 文廟에서 黜享되었던 것이다.⁴⁵⁾ 그런데 영조가 불과 50여 년만에 儒賢의 범주에서 제외되었던 馬融의 책을 校書館에서 간행하도록 하여 弘文館과 侍講院 등에 內賜한 것을 보면, 이 시기 영조의 孝와 忠에 대한 강조가 단순히 유교 윤리의 보급이라는 측면과 관련된 것이라기 보다는 강력한 군주권의 정립이라는 절실한 현실적 목적과 깊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⁴⁶⁾ 이러한 점은 형식적·내용적으로 『忠經』과 짝을 이루는 『孝經』 역시 이때 함께 간행되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 『孝經』의 핵심 내용 또한 忠의 전제로서 孝의 의미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⁴⁷⁾

이러한 점은 이 시기 영조가 서적정책을 통해 추구했던 바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즉위 이래 孝와 忠에 대한 논쟁을 거치면서 君君臣臣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君臣紀綱의 확립을 강조해온 영조는 己酉處分 이후 어느 정도 안정된 정국 기반 위에서 강력한 왕권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이념을 모색하는 가운데, 孝에 근본한 忠의 이념을 국가 운영의 원리로

「揚聖」, 제14장 「辨忠」, 제15장 「忠諫」, 제16장 「證應」, 제17장 「報國」, 제18장 「盡忠」.

42) “『忠經』者, 蓋出於『孝經』也. 仲尼說孝者, 所以事君之義, 則知孝者俟忠而成之. 所以答君親之恩, 明臣子之分, 忠不可廢於國, 孝不可弛於家, 孝既有經, 忠則有關, 故述仲尼之說, 作『忠經』焉.”(『忠經』「忠經序」)

43) “夫惟孝者, 必貴於忠, 忠苟不行, 所率猶非其道, 是以忠不及之而失其守, 匪惟危身, 辱及親也. 故君子行其孝, 必先以忠, 竭其忠, 則福祿至矣.”(『忠經』「保孝行」)

44) 『肅宗實錄』 권13, 8년 5월 20일(정묘), 21일(무진).

45) 鄭玉子, 『朝鮮後期文化運動史』 제1장 「肅宗朝 國家祭儀의 整備」, 1988 참조.

46) 이와 관련하여 숙종대 蕩平論을 처음 제기했던 朴世采가 馬融 黜享의 문제점을 비판하였던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南溪集』 권19 「文廟廟制及馬融等八儒黜廟議」.

47) “『孝經』曰: 揚名顯親, 爲孝之終, 則知非忠不能成孝.”(『忠經』「忠經序」)

확립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노력의 성과물인 『忠經』을 통해 드러나는 충의 이념이란 결국 孝의 완성은 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전제 아래 개인 윤리 차원의 孝 이념을 국가적인 범위까지 확충한 것이었다. 따라서 父子와 君臣은 동일한 관계로 설정되며, 자식이 부모의 명에 복종하듯이 신하 또한 국왕의 명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의리가 강조됨으로써, 충의 이념은 결국 국왕의 권위를 강화하는 이론으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영조의 이같은 정국 운영론은 漢의 정치사상의 특징인 孝治論을 방불케 하는 것이기도 하였다.⁴⁸⁾ 영조는 이 무렵 강력한 왕권과 정비된 관직체제를 구비하였던 漢文帝의 업적을 칭송하며 제도개혁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언설을 자주 남기는데,⁴⁹⁾ 이러한 면모는 『忠經』·『孝經』의 간행과 더불어 영조가 이 시기 한나라의 정치제도에 각별한 관심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영조의 관심은 이때가 국가 체제의 실질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봉당 간의 갈등을 조정할 주체로서 강력한 왕권의 수립이 요청되었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적 성향은 영조가 추구한 蕩平이 그동안 조선왕조가 典範으로 삼아왔던 宋代의 사상을 근간으로 삼으면서도, 거기에 孝治를 내세워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였던 漢代의 장점을 보충하고자 하던 노력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정치체제의 측면에서 宋學과 밀접하게 결부된 봉당정치 체제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古今의 治道를 면밀히 살펴보는 가운데 漢代의 장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⁵⁰⁾ 이러한 면모는 당시 영조의 성리학 이해가 '義理論'의 기본틀을 지키면서도 당면한 更張의 과제 해결을 위해 '堯舜之治'의 추구하고 절충되며 '功利論'으로 확대되었던 것과도 상통하는 측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⁵¹⁾

이상과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국왕권의 위상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孝'와 '忠'에 대한 그간의 논란이 일단 정리되었고, 영조는 이를 통해 확립된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체제의 건설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3. 制度改革과 法典의 整備

영조는 1740년(영조 16) 1월 金昌集·李頤命의 復官을 명한 庚申處分을 통해 자신의 즉위를 도왔던 노론 4대신의 무죄를 선언함으로써, 노론측이 주장해온 신임의리를 인정함과

48) 李成珪, 「漢代 孝經의 普及과 그 理念」, 『韓國思想史學』10, 1998. 이러한 면모는 이 시기 영조와 趙顯命 등 蕩平대신들이 堯舜·周公·孔子 못지않게 漢唐의 中興한 君主像을 강조하는 경향과도 관련이 있는 듯하다.

49) 『英祖實錄』 권48, 15년 1월 5일(임자).

50) 이러한 점은 영조의 蕩平論에 비판적이던 노론 韓元震 역시 인정하는 것이었다. 『英祖實錄』 권10, 2년 8월 16일(을해).

51) 鄭景姬, 앞의 논문, 1998, 183쪽 참조

동시에 임인옥사와 관련된 스스로의 무혹을 완전히 해소하게 되었다.⁵²⁾ 영조는 이때의 처분으로 왕위계승 과정에서 빚어진 그간의 논란을 완전히 정리함으로써 자신의 정통성과 관련된 논란을 종식시키고, 숙종 후반 이래 제기되었던 노·소론의 의리를 둘러싼 갈등에서 벗어나 자신이 구상한 蕩平의 정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펴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는 庚申處分 이듬해인 1741년(영조 17) 1월부터 시작된 국가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 작업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영조는 제도개혁이 진행중이던 같은 해 9월 그간의 誣案을 불살라버리고 辛酉大訓을 반포함으로써 즉위 전반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강력한 왕권의 구축과 蕩平 기반의 마련을 위한 정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다.⁵³⁾ 따라서 이 시기의 서적정책은 제도개혁의 과정을 정리하고 그 성과를 집대성하는 가운데, 영조 전반기에 추진되었던 개혁정책을 정리하며 새로운 시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표 5〉·〈표 6〉에서 나타나는 이 시기의 서적정책의 특징으로는 무엇보다 제1기와 제2기에는 별로 보이지 않던 ⑤법전 ⑥관직에 해당하는 서적들의 편찬과 간행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면모는 영조 16년에서 20년에 이르는 기간이 제1기의 특징인 국가·왕실의 강화 및 제2기의 특징인 강력한 왕권을 뒷받침할 새로운 정치사상의 모색이라는 두 가지 흐름을 구체적인 제도개혁을 통해 종합하며 蕩平 기반을 정립해간 시기였다는 점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영조 17년의 개혁은 제일 먼저 宋寅明의 주도 아래 왕실과 관련된 각 陵官의 官制 개정에서 출발하였다.⁵⁴⁾ 健元陵을 비롯한 각 陵의 陵官 1員을 승으로 승진시키고, 尙衣院·宗廟署·社稷署·繕工監 등의 直長을 主簿로 승진시킨 이때의 관제 정비는 전체적으로 왕실 관련 관청의 직제를 높이고 인원을 늘리는 작업이었다. 본격적인 제도 개혁의 출발이 이러한 내용이었다는 점은 향후 전개될 제도 개혁의 전체적인 방향과 성격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즉 왕실관련 기구의 강화는 제2기에 확립된 忠 사상을 바탕으로 왕실의 권위와 위상을 법제적으로 提高하는 가운데 각종 개혁이 추진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제3기 초반의 서적 편찬·간행의 현황은 이러한 면모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 庚申處分이 있었던 16년 1월에 제일 먼저 孝宗 및 肅宗妃 仁元王后的 尊號加上과 관련된 儀軌들이 편찬되는 가운데, 영조는 조선왕조의 創業期에 이루어진 문물제도 정비의 성과를 종합한 『治平要覽』의 간행을 校書館에 명하였다.⁵⁵⁾ 『治平要覽』의 간행은 19년 3월에 완성된 『攷事撮

52) 『英祖實錄』 권51, 16년 1월 10일(임자).

53) 『英祖實錄』 권53, 17년 9월 24일(병술).

54) 『英祖實錄』 권53, 17년 1월 3일(기사).

55) 『英祖實錄』 권52, 16년 7월 4일(임신).

〈표 5〉 1740년(영조 16)~1644년(영조 20) 서적 간행의 추이

번호	연도	서명	편저자/간행처	분류
1	1740(영조 16)	孝宗加上謚號都監儀軌	謚號都監	전례
2	1740(영조 16)	璿源譜略	宗簿寺	왕실
3	1740(영조 16)	仁元王后五尊號尊崇都監儀軌	尊崇都監	전례
4	1740(영조 16)	治平要覽	鄭麟趾/校書館	정치
5	1740(영조 16)	宗簿寺儀軌	宗簿寺	관직
6	1740(영조 16)	璿源譜略	宗簿寺	왕실
7	1740(영조 16)	崇禎後再壬子式年退行癸丑司馬榜目	禮曹	榜目
8	1741(영조 17)	宗廟儀軌續錄	宗廟署	관직
9	1741(영조 17)	魯陵志	尹舜學	왕실
10	1741(영조 17)	當代璿源錄	宗簿寺	왕실
11	1741(영조 17)	御製大訓	英祖	정치
12	1742(영조 18)	童蒙先習	朴世茂	교육
13	1742(영조 18)	兵將圖說	世祖	기타
14	1742(영조 18)	崇禎再辛酉式年司馬榜目	禮曹	榜目
15	1743(영조 19)	攷事撮要	校書館	관직
16	1743(영조 19)	良役實摠	趙顯命	민생
17	1743(영조 19)	朱子書節要	陶山書院	교육
18	1743(영조 19)	癸亥調聖榜目	禮曹	榜目
19	1743(영조 19)	璿源譜略	宗簿寺	왕실
20	1743(영조 19)	新補受教輯錄	弘文館	법전
21	1743(영조 19)	大射禮儀軌	禮曹	전례
22	1743(영조 19)	太常志	奉常寺	관직
23	1744(영조 20)	莊祖獻敬后嘉禮都監儀軌	嘉禮都監	전례
24	1744(영조 20)	光國志慶錄	校書館	왕실
25	1744(영조 20)	大學章句大全	校書館	교육
26	1744(영조 20)	論語集註大全	校書館	교육
27	1744(영조 20)	孟子集註大全	校書館	교육
28	1744(영조 20)	中庸章句大全	校書館	교육
29	1744(영조 20)	周易傳義大全	校書館	교육
30	1744(영조 20)	詩傳大全	校書館	교육
31	1744(영조 20)	書傳大全	校書館	교육
32	1744(영조 20)	小學	校書館	교육
33	1744(영조 20)	小學集成	何士信/完營	교육
34	1744(영조 20)	古鏡重磨方	李滉	교육
35	1744(영조 20)	聖學十圖	李滉	교육
36	1744(영조 20)	春官志	李盟休	관직
37	1744(영조 20)	明陵改修都監儀軌	改修都監	왕실
38	1744(영조 20)	續五禮儀	弘文館	법전
39	1744(영조 20)	璿源譜略修正時校正廳儀軌	宗簿寺	왕실
40	1744(영조 20)	進宴廳儀軌	進宴都監	전례
41	1744(영조 20)	續大典	纂輯廳	법전
42	1744(영조 20)	弘文館志	李宗城	관직
43	1744(영조 20)	古今歷代標題註釋十九史略通考	趙明履	교육
44	1744(영조 20)	璿源系譜紀略	宗簿寺	왕실
45	1744(영조 20)	性理大全	校書館	교육
46	1744(영조 20)	小學諺解	校書館	교육
47	1744(영조 20)	小學諸家集註(宣政殿訓義)	校書館	교육
48	1744(영조 20)	訓諭	英祖	정치
49	1744(영조 20)	當代璿源錄	宗簿寺	왕실
50	1744(영조 20)	進宴儀軌	進宴都監	전례
51	1744(영조 20)	溫陵志	金光泰	왕실

〈표 6〉 1740년(영조 16)~1744년(영조 20) 간행된 서적의 내용과 비율

	①전례	②왕실	③정치	④교육	⑤법전	⑥관직	⑦변란	⑧실록	⑨민생	⑩방목	⑪기타	소계
종수	6	11	3	17	3	6	0	0	1	3	1	51
비율	11.8%	21.6%	5.9%	33.3%	5.9%	11.8%	0.0%	0.0%	2.0%	5.9%	2.0%	100%

『要』와 함께 그동안 조선왕조에서 이루어진 제도변화의 추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사전 정비작업이라는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그리고 주요 관서의 업무를 정리한 儀軌들이 편찬되기 시작하였는데, 흡사 官署志의 체제와 유사한 이 시기의 儀軌들은 국가 전례의 세세한 부분을 기록한 일반적인 儀軌類와는 달리, 각 관서의 연혁과 기능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한 특징을 지닌 의례로는 먼저 역대 왕실의 尊號·諡號 加上 및 『璿源譜略』·『國朝御牒』 간행을 관장하던 宗簿寺의 연혁과 기능을 내용으로 하는 『宗簿寺儀軌』가 16년 9월에 편찬되었고, 이듬해인 17년 8월에는 宗廟 廟制의 개정과 관련된 宗廟署의 『宗廟儀軌續錄』이 완성되었다. 『宗廟儀軌續錄』은 종묘 건립 이래의 사적을 처음으로 정리한 1706년(숙종 32) 『宗廟儀軌』의 편찬을 계승한 것이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祭享」·「廟見」·「祈告儀」·「祝幣」·「祭器」·「祭服」·「薦新」·「修補儀章」 등 종묘에서 행해지는 구체적인 예식을 규정한 항목보다는 왕실의 정통성과 관련된 「各室位版題式」·「各室位號序次」·「復位」·「加上尊諡」·「冊寶」 등의 항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왕위 계승관계를 밝힌 「各室位版題式」·「各室位號序次」의 내용은 『宗廟儀軌』와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국초부터 경종에 이르는 27대를 모두 수록하였으며, 또한 중종반정 이후 공신세력에 의해 억울하게 폐위되었던 中宗妃 愼氏의 復位 始末을 기록한 「復位」는 전체 분량의 1/4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 능묘의 사적을 정리한 陵墓志도 편찬되었다. 영조는 『宗廟儀軌續錄』 이후에도 愼妃 복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며 愼後聃이 愼妃와 관련된 사적을 기술한 『溫陵志』를 개정하도록 명하였는데,⁵⁶⁾ 이는 3년 뒤인 1744년(영조 20)에 이르러 金光泰가 편찬한 『溫陵志』로 정리되었다. 이와 더불어 영조는 단종의 폐위 및 癸酉靖難 당시 절의를 지켰던 인물들의 사적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결국 『魯陵志』의 편찬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제3기 초반에 이루어진 서적 편찬·간행의 정책에서 보이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역대 왕실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조선왕조 전 시기에 걸쳐 비중 있게 추진되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제1기에도 역시 국가전례·왕실관련 서적들의 중점적인 편찬·간행사업이 추진되었지만, 당시의 서적정책은 영조의 정통성 확립과 직접적으로 결부된 사안들, 즉 숙종·경종에 대한 추숭사업과 관련되어 전개되었다. 반면에 단종과 愼妃에 대한 관심에서 드

56) 『英祖實錄』 권55, 18년 6월 28일(을묘).

러나듯이, 이 시기에 편찬된 ①전례, ②왕실 관련 서적들은 그간 다져온 왕권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역대 先王들이 미처 행하지 못한 闕典을 보완하여 성리학적 명분론을 재정립한다는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한편 왕권의 강화가 단순히 왕실의 위엄과 권위를 드높인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닌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은 자명한 일이었다. 특히 봉당이 왕권을 능가하는 상황을 경험한 영조로서는 봉당정치 근간을 이룬 公論政治의 구조를 개혁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도 불가결한 과제가 바로 관직제도 개정의 문제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제도 개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吏郎通淸權과 翰林薦擧제에 대한 혁파가 17년 4월부터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주요 관서의 연혁과 기능을 정리한 官署志의 편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인사제도·관직제도 개혁에 대한 움직임은 영조 초반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다. 戊申亂 이전에도 吏曹銓郎의 通淸 및 이와 관련된 淸要職의 선발을 둘러싸고 ‘權柄을 나누어 分黨하려는 조짐이 보인다’는 史臣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당파 간의 치열한 대립이 나타나고 있었다.⁵⁷⁾ 아울러 기존 제도가 당파 갈등의 격화로 말미암아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기도 하였다.⁵⁸⁾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趙顯命은 각 당파가 是非를 스스로 만들어내어 임금까지 忠逆是非에 휘말리게 한 근본 원인이 바로 言論을 비롯한 淸要職에 있음을 지적하였고,⁵⁹⁾ 宋寅明은 봉당 중심의 정치구도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임금이 인사권을 장악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영조에게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中批를 통해 인사권을 행사할 것을 청하기도 하였다.⁶⁰⁾

이에 영조는 蕩平의 요체가 공정한 인사에 달려 있음을 여러 차례 하교하는 가운데, 『經國大典』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16세기 이래 관습으로 정착된 吏曹郎官의 비대해진 권한 및 翰林薦擧제를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하였다. 그리고 능력있는 인재가 등용되지 못하는 인사 구조에 대한 개혁 방안을 담은 柳壽垣의 「官制序陞圖說」에 깊은 관심을 표하며 관직제도의 문란으로 집약되는 봉당정치의 폐단을 시정할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러한 구상이 구체화 된 것이 바로 영조 17년 4월의 「吏曹郎選釐革節目」과 「翰薦釐革節目」의 반포였다. 이에 따라 吏曹郎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던 三司를 비롯한 淸要職 및 館閣制度 전반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藝文館 檢閱의 自薦制가 폐지되고 왕이 직접 시험을 주관하여 사관을 선발하는 召試法이 시행되었다. 또한 館閣의 핵심기구로서 公論에 가탁하여 당쟁을 주도한다는 혐의를 받아온 弘文館을 장악하기 위해 弘文錄의 절차를 개혁하고, 임금의 特旨로

57) 『英祖實錄』 권13, 3년 10월 24일(병오); 권14, 3년 12월 17일(무술).

58) 『英祖實錄』 권53, 17년 2월 3일(무술).

59) 『英祖實錄』 권9, 2년 2월 22일.

60) 『英祖實錄』 권53, 17년 1월 26일(임진).

관원을 임명하는 中批를 통해 弘文館員을 임명하기 시작한 것도 대략 이 시기부터였다.⁶¹⁾ 이러한 과정을 통해 봉당정치기 公論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자임하던 淸職의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영조는 봉당이 주창하는 公論에 휘말리는 현상을 배제하고 자신의 의도대로 蕩平政治를 펴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관직제도의 개정은 서적정책에서 官署志의 편찬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때 편찬·간행된 官署志로는 『太常志』·『春官志』·『弘文館志』 등 3종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들 官署志에서 다룬 宗簿寺·吏曹·弘文館이 16년의 왕실사적의 정리 및 17년의 관직제도 개정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관서들이었다는 점은 이 시기 영조가 추진한 서적정책의 근본 의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⁶²⁾

官職制度 개정으로 대표되는 영조 17년의 제도개혁이 일단 마무리된 뒤로는, 조선사회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필수적인 禮樂과 思想의 정비작업이 뒤따르게 되었다. 이는 복잡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강력한 왕권의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제1기와 제2기와는 달리, 이 시기가 영조의 재위 20년 즈음에 도달하면서 그간의 다양한 사상적 모색을 수습하여 안정된 국가체제를 건설해가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조는 17년 제도개혁의 시작과 더불어 冕服의 제도를 개정하고 百官의 朝服·祭服를 바로잡는 등 服飾으로 대표되는 禮文의 정비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⁶³⁾ 이와 함께 무엇보다 중시했던 부분이 음악에 대한 정리 작업이었는데, 영조는 세종대 갖추어진 禮樂文物이 전해지지 않음을 이유로 雅樂에 대한 釐正을 명하였다. 이는 聲音은 정치와 서로 통한다는 전통적인 음악관을 계승하는 면모이기도 하였는데, 그 가운데 특히 雅樂은 제왕이 유의해야 할 바임을 들어 雅樂에 대한 정리를 명하였던 것이다.⁶⁴⁾ 그리고 영조 19년 내내 宗廟의 제사에서 사용되는 雅樂의 정리와 관련된 논란이 그치지 않았는데, 이러한 禮樂에 대한 관심은 1744년(영조 20) 8월의 『續五禮儀』의 편찬으로 귀결되었다.⁶⁵⁾

이와 더불어 조선왕조의 근본이념인 성리학에 대한 본격적 정리 작업이 19년 무렵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전 시기에 간행된 성리학 관련 서적 중에서는 1735년(영조 11) 司譯院에서 印刊한 『四書正音』이 눈에 띄지만, 이는 사상의 정비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漢語 교육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이 시기에 와서는 四書三經을 중심으로 한 성리학의 기본 경서 및 先儒들의 저작들에 대한 본격적인 간행이 추진되었던 것이다. 영조는 우선 陶山書院에서 이루어진 『朱子書節要』의 간행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듯하다. 이는 즉위 초반 정치적 현안의 해결에 급급하였던 영조가 이제는 지방에서 이루어

61) 趙顯命 등은 이에 그치지 않고 弘文錄과 臺諫의 通淸까지도 개혁하려 하였지만, 영조는 일단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英祖實錄』 권53, 17년 4월 22일(병진).

62) 官制改革과 官署志 편찬의 관계에 대해서는 즐고, 「英·正祖代 弘文館 機能의 변화」, 『韓國史論』39, 1998 참조.

63) 『英祖實錄』 권57, 19년 4월 14일(정유).

64) 『英祖實錄』 권56, 18년 7월 4일(신유).

65) 『英祖實錄』 권60, 20년 8월 27일(신미).

지는 서적 간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정도로 조선왕조의 근간을 이룬 성리학의 정리와 보급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朱子書節要』가 李滉의 대표적인 저술이라는 점은 그간 나타났던 다양한 사상적 모색을 朝鮮性理學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던 영조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였다.⁶⁶⁾ 이는 영조 20년에 退溪의 대표적인 저술인 『聖學十圖』와 함께 『古鏡重磨方』의 편제를 직접 지어 간행하도록 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⁶⁷⁾

그리고 四書三經과 『小學』으로 대표되는 성리학의 기본 서적들에 대한 관심 역시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영조는 그간에도 몇 차례 四書三經의 간인을 명한 일이 있었는데 실제 인출까지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20년 2월에 다시 한 번 四書三經 및 『史略』·『小學』 등의 인출을 校書館에 명하였는데, 이 때 영조는 四書三經과 『小學』은 성리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책인 만큼 한 글자라도 잘못이 없도록 교정에 유의할 것을 신하들에게 신신당부하였는데,⁶⁸⁾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20년 무렵에는 실제 간행까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奎章閣에 소장되어 있는 수많은 四書三經의 大全本들 가운데 戊申字로 刊印된 판본들이 아마 20년을 전후한 시기 영조가 四書三經의 간행을 위해 기울었던 노력의 성과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러한 경향은 집권 후반기로 계승되며 더욱 강화되어가는 추세를 보이게 된다. 이와 함께 영조는 『小學』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漢·唐과의 비교를 통해 조선의 사상적 정체성을 『小學』에서 찾아보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⁶⁹⁾ 그리고 성리학의 근본 학설을 집대성한 『性理大全』의 판본을 개수하여 다시 간행하도록 명한 것 역시 四書三經 및 『小學』의 간행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⁷⁰⁾ 이 시기 영조의 성리학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이전 시기와는 다른 것이었음을 잘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제도개혁이 마무리에 접어들던 20년 후반 무렵, 영조는 조선왕조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로 치성했던 당파간의 갈등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건설한 즉위 이래의 개혁 작업의 성과가 先王들의 업적을 계승하여 조선을 中興시킨 것이라는 평가를 스스로 내리게 되었다. 즉 創業 초기 군주들에 버금가는 자신의 업적에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다시 先王들에 대한 繼志述事의 이념으로 표출되었다. 『續五禮儀』의 편찬을 통해 세종대 禮樂 정비의 업적을 칭송하고, 禁中에 전해오던 『兵將圖說』을 印刊하도록 명하면서 세조의 공덕을 추모하는 모습은 그가 세종·세조의 뒤를 이어 조선을 중흥한 군주라는

66) 비록 제2기에도 『退溪先生言行錄』을 간행하도록 명한 일이 있었지만, 이는 李滉의 사상 자체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노·소와 더불어 南人까지 포용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介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67) 『英祖實錄』 권59, 20년 3월 5일(계미).

68) 『英祖實錄』 권59, 20년 2월 17일(을축).

69) 『御製小學』 「御製小學後序」.

70) 『英祖實錄』 권59, 20년 3월 5일(계미).

자부심의 표현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宗系辨誣를 기념하여 숙종대 편찬된 『光國志慶錄』의 重刊을 명하여 태조·선조·숙종 3代の 偉勳을 기리도록 하였으며, 『小學訓義』와 『經國大典』 편찬의 의미를 세종과 성종을 계승하는 데에서 찾기도 하였다.⁷¹⁾

그리고 영조는 그간의 관직제도의 정비와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정책의 성과를 집대성한 결과물인 『續大典』이 완성되어가던 20년 10월에, 즉위 후 처음으로 대왕대비전에 進宴을 베풀며, 자신이 왕위에 오른 이래 추진해왔던 개혁 정책이 일단락되었음을 내외에 과시하였다.⁷²⁾ 그리고 1744년 11월에 『續大典』이 완성된 직후 승지와 유신들을 불러 御容을 내어 보이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 이 畫像을 여러 신하들에게 내어 보이는 것은 이를 구경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후일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畫像을 보고 길이 『大訓』의 뜻을 따르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續大典』·『續五禮儀』와 『大訓』이 모두 완성되었으니, 내 나이가 비록 늙었다고 하더라도 나의 일은 끝난 것이다.⁷³⁾

위의 글을 통해 영조는 『大訓』과 『續大典』·『續五禮儀』의 완성이 자신이 즉위 이래 추진해온 개혁정책의 마무리였음을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즉 그간 봉당정치에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제창한 蕩平論의 기반이 이념적·법제적으로 완성되었음을 천명한 것이다. 영조의 이러한 말에 대하여 宋寅明 역시 『續大典』과 『續五禮儀』를 편찬한 목적이 大道를 후세에 남겨주고 먼 후일을 경영하려는 영조의 뜻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였는데,⁷⁴⁾ 이때 大道란 바로 蕩平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로써 영조는 전반기 내내 자신의 모든 힘을 기울였던 蕩平의 토대를 완성하였고, 재위 후반기에는 안정된 정국을 기반으로 새로운 구상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되었다.

맺음말

文治主義를 표방한 조선왕조에서 서적정책은 治亂의 근본으로 인식되어왔다. 특히 영조는 즉위 초반의 복잡한 정국 속에서도 서적의 편찬과 간행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는 새로운 治國 이념으로 제시된 蕩平論을 이론화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영조 전반기 국가에서 주도한 서적의 편찬과 간행사업은 당시의 정국 동향과 긴밀한 연관 아래

71) “前日小學訓義，因成宗朝事而成，今日此書，又將因世宗朝事而成。”(『英祖實錄』 권59, 20년 6월 26일 임신)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小學集註』를 편찬한 세종과 『經國大典』을 편찬한 성종을 바꾸어 기술하였다.

72) 『英祖實錄』 권60, 20년 10월 4일(정미).

73) 『英祖實錄』 권60, 20년 12월 1일(갑진).

74) 『英祖實錄』 권60, 20년 12월 24일(정묘).

진행되었으며, 영조는 적극적으로 서적 정책에 개입하여 당파 간의 갈등을 해소시키며 강력한 왕권을 확립해 갔다.

경종대 신임옥사를 겪고 즉위한 영조 전반기의 정국은 붕당정치의 폐단이 극에 달한 시기였다. 붕당 간의 갈등이 왕위 계승문제와 결부되어 왕권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영조는 무엇보다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붕당만 있을 뿐 나라와 임금이 존재하지 않던' 상황을 타개할 필요를 절감하였다. 따라서 영조는 즉위 초반기 서적정책의 중심을 왕실관련 儀軌類의 간행과 王室系譜類에 대한 정리 작업에 두고 자신의 정통성 확보와 왕실의 권위를 提高하는데 전념하였다.

庚申處分에서 己酉處分에 이르는 10년간은 즉위 초반 왕위 승계의 정당성을 정립하는 가운데 제기되었던 '忠'의 논리를 기반으로 강력한 왕권을 뒷받침할 사상적 모색을 진행하던 시기였다. 어느 정도 안정된 정국을 바탕으로 인사의 공정성 확보와 민생 안정을 蕩平의 두 가지 목표로 구체화한 영조는 5년 8월 己酉處分에서 9년 1월 十九下教에 이르는 기간 동안 『三綱行實圖』의 간행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君臣義理의 확립을 통한 忠 이념의 보급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十九下教 이후 13년 8월 混沌開闢에 이르는 기간 동안은 그간 다져진 왕권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민생에 대한 구체적 관심을 표명하는 가운데, 奏議類 및 『貞觀政要』 등 政書類의 간행과 강독을 통하여古今의 정치제도에 근거한 정치운영론을 고민하던 시기였다. 이후 混沌開闢으로부터 16년 1월 庚申處分에 이르는 기간은 『忠經』·『孝經』의 간행에서 보이듯이 그간 논란의 쟁점을 이루었던 '孝'와 '忠'의 이념을 정리하며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였던 漢代의 정치체제를 참조한 새로운 君主像의 정립에 관심을 보이던 시기였다.

재위 16년 이후 영조는 이상과 같은 사상적 모색을 기반으로 大訓을 반포하여 그간의 정치적 논란을 정리하고,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붕당정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본격적인 제도개혁에 나선다. 그러한 개혁 작업의 성과물로 이 시기에는 각 관서의 儀軌 및 官署志가 간행되었고, 성리학의 기본 경서인 四書三經 및 『小學』 등의 간행을 통해 그간 조선사회의 근간을 이루었던 성리학의 정리와 보급에 본격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종합·정리하는 의미의 『續五禮儀』와 『續大典』이 완성됨으로써 영조 전반기 붕당정치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일단락되었다.

1745년(영조 21) 이후 영조는 집권 전반기에 갖추어진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인 蕩平策을 시행해 갔다. 이에 힘입어 정국은 장기적인 안정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영조는 전반기보다 더욱 적극적인 서적의 편찬과 간행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구체적으로 ① 강력한 왕권의 수립을 반증하는 御製類의 활발한 편찬, ② 1754년(영조 30) 洪啓禧의 주도 아래 간행된 三經四書로 대표되는 성리학 서적의 본격적인 정리, ③ 조선후기 사회의 정체성 정립과 관련된 『皇壇儀』 등 尊周論 관련 서적의 간행 등 전반기

와는 다른 면모를 보이게 된다. 이같은 집권 후반기 영조의 서적 정책의 특징에 대해서는 기회를 달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